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2. 12. 29(목) 10:40

제24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
(문화환경국 소관)



**복지건설위원회**  
전문위원 추병수

#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(안) 검토보고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79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2. 12. 21
- 라. 회부일자 : 2022. 12. 21

## 2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(안)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## 3.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[총괄]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최종예산	기 정 액					제3회추경(안) (명시이월)
		소 계	당초예산	제1회추경	제2회추경	간주처리	
계	771,331,611	771,331,611	622,601,831	12,006,600	54,447,176	82,276,004	- <53,068,736>
일반회계	753,864,214	753,864,214	608,145,854	12,006,600	53,695,996	80,015,764	- <50,868,736>
특별회계	17,467,397	17,467,397	14,455,977	-	751,180	2,260,240	- <2,200,000>
의료급여	820,035	820,035	636,085	-	166,950	17,000	-
주민소득	642,392	642,392	291,400	-	350,992	-	-
주차장	16,004,970	16,004,970	13,528,492	-	233,238	2,243,240	- <2,200,000>

## 4. 명시이월 사업내역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세부사업명	2022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		
			계	교부세(금)	국시비보조금	구비
<b>합계 : 2개 부서 / 11건</b>		19,466,538	<b>5,483,613</b>	529,800	0	0
문화체육과 (7건/4,862,813천원)	금천문화 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조성	173,170	<b>46,945</b>			46,945
	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	700,000	<b>691,373</b>			691,373
	금천문화거점 공간 조성	632,517	<b>458,515</b>			458,515
	전통사찰 시설 확충 및 정비 지원	1,000,000	<b>1,000,000</b>		1,000,000	
	금천 대표 도서관 건립	50,000	<b>20,000</b>			20,000
	가산도서관 생활 SOC 리모델링 추진	2,100,000	<b>2,068,350</b>		800,000	1,268,350
	박미빛물품프장 다목적문화체육 센터 건립	607,000	<b>577,630</b>			577,630
청소행정과 (4건/620,800천원)	일반쓰레기 수집·운반 대행	13,450,390	<b>91,000</b>		91,000	
	환경미화원 후생복지	257,861	<b>46,800</b>	46,800		
	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	145,600	<b>133,000</b>	133,000		
	투명페트병캔 무인회수기 운영	350,000	<b>350,000</b>	350,000		

## 5. 검토의견

○ 문화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은 2개 부서 11건 54억 8,361만 3천원으로

- 문화체육과 : 7건 48억 6,281만원

(단위 : 천원)

연 번	사 업 명	2022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비 고 (사 유)
합 계 ( 7건 )		5,262,687	4,862,813	
1	금천문화 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조성	173,170	46,945	· 이월내역 : 금천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 BF인증 컨설팅 용역비 및 그에 따른 추가 공사비 · 이월사유 : BF 인증기관에 접수 건수 증가로 인한 심사 일정 지연으로 컨설팅 용역비 및 심사 보완사항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연내 집행 불가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2023년 집행하고자 함
2	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	700,000	691,373	· 이월내용 : 금빛공원 열린 광장 조성 사업예산 이월 · 이월사유 : 추진 시기 지연으로 인해 연도 내 지출 불가
3	금천문화거점 공간조성	632,517	458,515	· 이월내용 : 금천문화거점공간 조성 건축기획용역비 및 설계비 · 이월사유 : 연도 내 지출 불가 -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추진 일정 지연으로 금천문화거점공간 조성 사업의 연내 집행이 어려워짐
4	전통사찰 시설확충 및 정비지원	1,000,000	1,000,000	· 이월내역 : 사업예산 전액 명시이월 · 이월사유 : 사찰 측과 토지 지목변경 가능여부 및 세부 사업내용 협의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 어 보조금 교부(서울시→금천구) 신청 지연으로 2022년 12월 보조금이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해 명시이월하여 2023년에 집행하고자 함
5	금천 대표도서관 건립	50,000	20,000	· 이월내용 : 건축기획 용역비 · 이월사유 : 집행시기미도래
6	가산도서관생활 SOC 리모델링 추진	2,100,000	2,068,350	· 이월내역 : 시설비,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· 이월사유 : 연도 내 지출 불가 -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지연으로 가산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의 연내 집행이 어려워짐
7	박미빛물펌프장 다목적문화체육 센터 건립	607,000	577,630	· 이월내용 : 설계비 집행잔액 577,630천원 · 이월사유 : 연도내 집행불가 건축심의 완료 후 설계공모하여 실시설계

- 청소행정과 : 4건 6억 2,080만원

(단위 : 천원)

연 번	사 업 명	2022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비 고 (사 유)
합 계 ( 4건 )		14,691,421	620,800	
1	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	13,450,390	91,000	· 이월내역 : 시 보조금으로 교부된 전기전동차 구입 예산 중 2022년 9월 서울시 추경 편성되어 10월 간주처리된 예산 이월 · 이월사유 : 연도 내 지출 불가 - 전기전동차 제작기간이 현재 5개월 이상 소요되어 명시이월 후 구입 예정
2	환경미화원 후생복지	719,831	46,800	· 이월내용 : 환경공무원 간식비 · 이월사유 : `22. 12. 특별교부금이 교부 결정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.
3	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	171,200	133,000	· 이월사유 : `22. 12. 특별교부금이 교부 결정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.
4	투명페트병 캔 무인회수기 운영	350,000	350,000	· 이월내용 : 투명페트병·캔 무인회수기 설치 · 이월사유 : `22. 12. 특별교부금이 교부 결정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.

○ 문화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제1항의  
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 
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 
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
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이월사업비는 최소화 하는 것이  
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## 관련 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45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### □ 「지방재정법」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[전문개정 2011.8.4.]

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(事故移越費)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 [전문개정 2011.8.4.]